

예비군 복무는 이렇게 합니다!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병 무 청
육 · 해 · 공군본부

- 병역의무 등 의무복무 종류...3
- 예비군 훈련...4
- 병력동원훈련소집과 일반훈련의 차이점...5
- 병무청에서 하는 일...6
 - 예비군 편성...7
 - 병력동원소집...9
 - 병력동원훈련소집...11
 - 전시근로소집...14
 - E-mail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수령 신청...15
 - 질병사유 병역처분변경 신청자 처리...16
- 지역/직장예비군부대에서 하는 일...17
 - 동원 미참가자 훈련...18
 - 향방 작계훈련...18
 - 향방 기본훈련...19
 - 예비군 교육훈련 보류...19
- 예비군 훈련별 업무담당 및 기관...20
- 기타안내...21
- 용어해설...22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 ▶ 제1국민역 편입 : 18세
- ▶ 징병검사 실시 : 19세
- ▶ 현역/상근 및 공익근무요원 등 복무(18~36개월)
- ▶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장교/부사관: 1~6년차, 병: 1~4년차)
- ▶ 전시근로소집 : 병력동원소집지정 제외 보충역의 병(8년차까지), 제2국민역(40세까지)

■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 복무

- ▶ 장교, 준/부사관 : 군인사법에 규정된 현역 연령 정년까지
- ▶ 병 : 군 복무를 마친날의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까지

■ 『병역법』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 추가편성 대상

- ▶ 추가편성대상 : 예비군복무 만료 후~40세 까지(병에 한함)
 - 병역법 : 예비역 및 보충역 병의 병역의무는 40세 까지
 - 향토예비군 설치법 : 향토방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군 복무기간이 경과한 예비역 및 보충역 병

■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복무

- ▶ 민방위 복무 대상자 : 20세~40세 까지
- ▶ 민방위 복무 제외자 : 군인, 예비군, 입영대상자, 학생, 경찰, 등록장애인 및 병역면제자, 장기외향선원, 의용소방대원, 공공 직업훈련원생, 지방의회 의원 등

■ 훈련 종류별 시간

구 분			계	실제훈련시간					예 비 시 간	
				병력동원 훈련소집	동원미 참 훈 련	항 방 기본훈련	항 방 작계훈련	소 집 점 검		
신규전역자(간부/병)			100						100	
병	1~4 년차	동원 지정 자	100	2박 3일					72	
		동원미지정자	100		24		12		64	
	5~6년차(지정자)		68			8(8)	12(6)	(4)	48	
	7~8년차		68						68	
간 부	1~6 년차	동원 지정 자	100	2박 3일					72	
		동원미 지정자	장 교	100		2박 3일			72	
			부서관	100		24		12		64
			부서관(해)	100		2박 3일				72
	7~8년차		68						68	
훈련 담당기관			병무청	예비군부대						

■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통지서 발행기관(병무청)

- ▶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충무훈련 등)
- ▶ 전시근로소집 지정자의 점검을 위한 소집점검

■ 동원미참가자 훈련 등 통지서 발행기관(예비군 부대)

- ▶ 동원미참가자훈련, 항방기본훈련, 항방작계훈련, 병력동원소집 지정자(병 5~6년차)의 소집점검 등

■ 각종 훈련 입소시 준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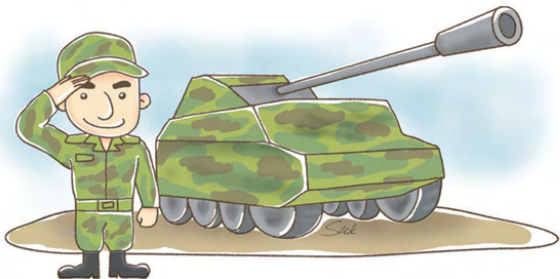
- ▶ 입소시간 준수 및 지정된 복장착용(예비군복, 예비군모, 군화 등)
- ▶ 개인신분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휴대

병력동원훈련소집과 일반훈련의 차이점

mma.go.kr

구 분	병력동원훈련소집	일반훈련
법적근거	병역법 제49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
대 상	• 동원지정된 예비군 중 - 장교/부사관 : 1~6년차 - 병 : 1~4년차	• 동원미지정자 • 동원훈련 연기, 귀가, 불응 등 미이수자(소집부대 재소집 훈련 대상자 제외) • 병5~6년차
훈련종류	• 병력동원훈련소집(2박3일)	• 동원 미참가자 훈련 • 항방 기본훈련 • 항방 작계훈련 • 소집점검훈련
훈련소집권자	지방병무청장	지역/직장예비군 부대장(수입군부대장)
벌칙규정	• 불참자 처리 - 연기원출원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할 경우 고발 - 재소집 또는 동원미참가자 훈련 • 처벌규정 -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병역법 제90조)	• 불참자 처리 - 2차 무단불참시 고발 - 동원미참자 입영훈련은 1차 보충훈련 불참시 고발 - 신고불참 : 보충훈련 • 처벌규정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8항)

- 예비군 편성
- 병력동원소집
- 병력동원훈련소집
- 전시근로소집
- E-mail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수령 신청
- 질병사유 병역처분변경 신청자 처리



예비군 편성

■ 예비군 편성 대상

- ▶ 예비역의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 ▶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예비역, 공익근무요원 · 산업기능요원 등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보충역

■ 예비군 편성 제외 대상

-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전역자 중 다음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군인사법 제41조에 해당되어 퇴역한 사람
 - 군인사법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로 제적 또는 신분상실 보충역
- ▶ 병 전역 또는 소집해제자 중 다음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 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제2국민역이나 병역면제 된 사람
 -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예비군 복무년차 적용 기준

- ▶ 연차적용 : 전역 또는 소집해제되는 다음해부터 예비군복무년차에 포함되며 예비군훈련 실시

※ 예비군 복무 1년차 : 전역 또는 소집해제 되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연차적용제외

- 전역 또는 소집해제되는 다음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 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해는 예비군복무년차에 포함되지 않으며 예비군훈련도 실시하지 않음

■ 예비군 편성 절차

- ▶ 지방병무청장은 현역 전역 또는 보충역(공익근무, 산업기능요원 등) 복무 만료자의 전역 인사명령서에 의하여 본인의 주소지 지역 예비군중대에 직권으로 편성
- ▶ 전역신고제도 폐지 : 1999. 7. 1 부터 시행

■ 예비군 신상 변동자의 처리

- ▶ 대학에 입학, 복학, 편입한 사람
 - 대학 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대학에 재학하는 사람
 - 대학 직장예비군부대 편성
 - ※ 대학 직장예비군부대에 예비군 교육훈련 보류신고→항방기본훈련(8시간)실시
 - 대학 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대학에 재학하는 사람
 - 주소지 지역예비군 부대 편성
 - ※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지역예비군 부대에 예비군훈련 보류신고→항방기본훈련(8시간)실시
- ▶ 직장에 취업(복직)한 사람
 - 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직장 : 직장의 장이 직권 편성
 - 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직장 : 주소지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
- ▶ 주소지를 옮긴 사람
 - 전입 신고를 한 주소지 지역 예비군부대로 자동 편성
 - ※ 신 주소지 지역예비군부대에 신고 하실 필요 없음



병력동원소집

■ 병력동원소집 및 지정

▶ 병력동원소집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군(軍) 작전 수요를 위하여 예비군을 동원하는 제도

▶ 병력동원소집 지정

전시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하여 예비군이 입영할 부대를 평시에 지정하여 두는 제도

예비군 모두가 동원지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동원지정은 군에서 요구하는 특기, 계급, 거주지역 등이 일치하는 예비군 중에서 필요한 인원 만큼을 전산에 의하여 지정하게 되므로 계급, 특기 등이 일치하지 않은 예비군은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A지역에 포병 특기가 20명이 필요한 경우

- 포병특기 예비군이 30명이 있을 경우
그 중에서 최근 전역자 20명만
동원지정되고, 남은 10명은
다른 유사특기에 지정되거나 미지정
- 포병특기 소유 예비군이
10명이 있을 경우 모자라는
10명은 임무수행이 가능한 유사
특기를 가진 최근 전역자로 동원
지정됨



■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분홍색 : 戰時用) 송부

-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예비군을 동원하기 위하여 소집부대가 지정된 예비군에게 주민등록이 설정된 주소지로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부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희망 수령지 신청자
 - ➔ 신청한 주소로 송부
 - E-mail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수령 신청자
 - ➔ 통지서 E-mail 송부와 동시에 송부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 ※ 희망 수령지 및 E-mail 수령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와 병력동원훈련 통지서를 혼동하지 마세요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색깔 : ■ (분홍색 : 戰時用)

병력동원훈련 통지서 색깔 : ■ (푸른색)

■ 병력동원소집 입영

-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방송·신문 등을 통해 국가 동원령이 선포되면 사전에 교부 받은 분홍색의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장소와 시간에 맞추어 입영

※ 병력동원소집통지서의 입영일시 계산방법

예) 입 영 일 시 : 동원령선포후 18시부터 19시까지

모이는장소 : 홍성고등학교 운동장

《예 시》

- 방송, 신문등으로 동원령이 3월1일 13:00에 선포되었고, 병력동원 소집 통지서상 입영일시가 동원령선포 후 18시부터 19시까지라면
 - ➔ 모이는 장소인 홍성고등학교 운동장에는 3월1일 13:00(동원령 선포시간) 부터 계산하여 18시간 이후인 다음날(3월2일) 07:00~08:00까지 도착하면 됨

병력동원훈련소집

■ 병력동원훈련소집

- ▶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병력동원소집 지정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소집부대 단위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훈련
 - 훈련소집 대상
 - 장교 및 부사관 : 예비군 6년차까지
 - 병 : 예비군 4년차까지
 - 훈련기간 : 2박 3일(소집부대 재영 훈련)

■ 병력동원훈련소집 부대 결정

- ▶ 소집부대의 계급별, 병과별(주특기) 소요에 따라 예비군의 거주지역, 전역연차 등을 고려하여 병력동원소집에 지정된 부대로 입영
 - 근거리 소집부대에 지정되어 훈련을 받는 것이 원칙
 - 그러나 소집부대에서 요구하는 소요와 예비군 자원 분포가 맞지 아니하여 원거리 부대에 지정된 사람은 멀리까지 가서 훈련을 받는 경우도 있음

※ 전년도에 원거리 부대에 지정된 경우
금년도에는 근거리부대 지정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나, 전시 전투력 및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정해진 사유(전출,
신상변동 등) 외에는 한번 동원지정된
부대(훈련부대)는 변경되지 않음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푸른색) 송부

- ▶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는 입영기일 7일 전까지 주민등록이 설정된 주소지로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부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희망 수령지 신청자
 - 신청한 주소로 송부
- ※ 희망 수령지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소시 유의사항

- ▶ 복 장 : 예비군복, 예비군모, 군화, 요대, 명찰 등 착용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전역증, 나라사랑카드, 자격·면허증 중 1개 반드시 지참
 -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 읍·면·동장이 발행한 본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사진 부착) 지참
- ▶ 무단 불참자로 간주하는 고발 대상
 - 입영시간 이후 도착, 규정복장 미착용, 음주 등 사유로 인수 거부된 사람

■ 병력동원훈련소집 불참자에 대한 처리

- ▶ 무단 불참자 :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 ▶ 연기자 : 연기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사람은 고발 비대상
 - ※ 무단불참 또는 연기된 사람은 재소집훈련(2박3일)을 받거나 예비군부대에서 실시하는 동원미참자 훈련 등 소정의 예비군 훈련을 이수하여야 함

■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

- ▶ 동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연기 신청

※ 지방병무청장이 심사 후 연기여부 결정

- 연기원서 제출기한 : 입영일 5일 전까지
- 연기신청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

병무청 홈페이지

『동원·예비군→동원훈련연기신청』에서 신청
(단,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함)

FAX

병무청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 신청·조회→민원서식→28호 서식)에서 병역의무기일연기원을 다운 받아 작성 후 관할 지방병무청에 FAX로 제출

우편신청

병역의무기일연기원서를 작성 관할 지방 병무청에 제출
※ 병역의무기일연기원서는 FAX 신청 방법을 참조하여 출력



전시근로소집

■ 전시근로소집 및 지정

▶ 전시근로소집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집을 실시하는 제도

-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
- 제2국민역

▶ 전시근로소집 지정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하여 전시근로소집대상자가 입영할 부대를 평시에 지정하여 두는 제도

■ 전시근로소집 통지서(흰색) 송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전시근로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주민등록이 설정된 주소지로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부

■ 전시근로소집 지정자의 소집점검 훈련

- ▶ 전시근로소집자로 지정된 보충역 예비군 5~6년차에 대하여 연1회(4시간) 소집점검 훈련 실시

■ 전시근로소집 입영

➔ 병력동원소집 입영 방법과 동일(10페이지 참조)

E-mail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수령 신청

■ E-mail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수령 신청이란?

- ▶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한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우편 수령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E-mail 수신동의를 받아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송부하는 제도

※ 관련법규 : 병역법 시행령 제3조 의2

- ▶ E-mail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가 발송되면 휴대폰으로 송부사실 문자 메시지가 전송됨

※ 평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는 E-mail과 등기우편 송부 병행



E-mail 수신동의 신청방법

- ① 병무청 홈페이지 방문(www.mma.go.kr)
- ② 『E-mail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수령 신청』 선택
- ③ 성명, 주민번호, 군번 입력후 조회 클릭
- ④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입력 후 『예』 클릭

※ 문의전화 :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질병사유 병역처분변경 신청자 처리

■ 신청대상

-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예비군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신청 및 신체검사 방법

신청방법	출원서류	신체검사	비고
방문·우편 또는 FAX	병역처분변경원서, 일반진단서	접수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예비군편성 관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터넷 신청	검사 당일 진단서 제출	신청일로부터 5일 이후	인터넷 주소 (www.mma.go.kr)

※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급이 1~6급으로 등록된 사람
- 전상·공상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1~7급으로 결정된 사람

인터넷 병역처분변경 신청방법

- ① 병무청 홈페이지 방문(www.mma.go.kr)
- ②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재신체검사·면제·감면 민원신청
→ 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
- ③ 진단서 기재 내용 입력(병록번호, 병명, 병원명 등)
- ④ 신체검사 통지서 전자 우편 수령 여부 결정 후 신청

※ 문의전화 :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 동원 미참가자 훈련
- 향방 작계훈련
- 향방 기본훈련
- 예비군 교육훈련 보류



동원 미참가자 훈련

■ 훈련대상

- ▶ 장교/부사관 : 예비군 1~6년차 동원미지정자
- ▶ 병 : 예비군 1~4년차 동원미지정자

■ 훈련방법

- ▶ 장 교 : 입영하여 2박 3일 훈련
- ▶ 부사관 및 병 : 3일간(24시간) 출·퇴근 훈련
다만, 해군(해병 제외)
부사관은 입영하여
2박 3일 훈련



항방 작계훈련

■ 훈련대상

- ▶ 부사관 : 예비군 1~6년차 중 동원미지정자
- ▶ 병 : 예비군 1~4년차 중 동원미지정자, 5~6년차

■ 훈련방법 : 출·퇴근

- ▶ 훈련횟수 : 연 2회(전·후반기 구분) 각각 6시간

※ 예비군 5~6년차 병 중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지정자는 항방작계 훈련 1회를 소집점검으로 대체 실시

향방 기본훈련

■ 훈련대상

- ▶ 예비군 5~6년차 병
- ▶ 예비군 교육훈련 일부 보류자(대학생 예비군 포함)

■ 훈련방법 : 출 · 퇴근 8시간

예비군 교육훈련 보류

■ 보류 직종 및 훈련시간

구 분	보류 직종	훈련시간
법규보류	• 21개 직종 - 국회의원, 경찰관, 소방관 등	훈련 없음
방침전면보류	• 13개 직종 - 우편집배원, 청원경찰 등	훈련 없음
방침일부보류	• 24개 직종 - 각급학교 학생 및 교사(교수) 등	훈련 일부 보류

■ 보류 신고

- ▶ 구비서류 : 보류원서, 관련 증빙서류
- ▶ 제 출 처 : 지역/직장예비군부대
-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FAX, 예비군홈페이지(www.yebigun1.mil.kr)

■ 보류해소신고

- ▶ 보류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류해소 신고서 제출

구 분	지방병무청(병무청)	군 및 예비군부대(국방부)
병력동원 훈련소집	• 통지서 교부 • 인원처리(연기 등) • 기피자 고발 • 입영 수송 / 여비지급	• 훈련 진행 • 급식 등 복지 • 흡연 및 금연지역 통제 • 퇴소여비지급 / 귀가수송
일반훈련	없 음	• 통지서 교부 • 연기 처리 • 불참자 고발 • 훈련 진행 • 훈련장 시설관리 • 흡연 및 금연지역 통제 • 입 · 퇴소 여비 및 중식비
민원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예비군 홈페이지 www.yebigun1.mil.kr 국방민원 포탈 www.mnd.go.kr

• 병력동원훈련소집

– 병무청에서 통지서를 교부하여 실시하는 2박3일 입영훈련

• 일반훈련 → 동원미참가자훈련, 항방훈련, 소집점검

– 지역/직장 예비군부대에서 통지서를 교부하여 실시하는 출 · 퇴근 훈련

■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 개인별 동원훈련 일정 확인

www.mma.go.kr ⇒ 동원 · 예비군 ⇒ 동원훈련일자 조회

➡ 동원훈련 연기절차 검색

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동원훈련 · 예비군

⇒ 병력동원 훈련소집연기

■ 병무민원상담소

➡ 전국 어느곳에서나 국번없이

1588-9090으로

모든 병무상담 실시



■ 향토예비군 홈페이지

➡ 일반예비군 훈련일정 등 검색

www.yebigun1.mil.kr

※ 본 안내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제도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병무청 동원관리과(042-481-288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비상사태

적의 공격, 반란, 민간폭동, 지진, 수재 또는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태롭게 하거나 정부의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붕괴시키는 공격적인 재해나 이에 준하는 긴급사태의 결과가 일국 영토내에서 일어나 국민 복리에 영향을 주는 위급사태

■ 국가동원령 선포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비상사태 발생시 국방부 장관의 제안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
(방송 · 신문 등 언론보도 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알림)

■ 총무훈련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시 · 도별로 병력 · 인력 · 물자동원, 재난대비 훈련 등 전시 대비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실제훈련

※ 병력동원소집 지정자는 입영훈련(2박 3일) 또는 소집점검훈련(4시간)
전시근로소집 지정자는 소집점검 훈련(4시간)

■ 쌍용훈련

전쟁이 발발했을 때를 대비, 전방의 실제 작전지역에 이동하여 진지확인 및 유사시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 가능여부와 부대의 전시동원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2박 3일)

■ 소집점검 훈련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지정자 중 예비군 5~6차 병을 대상으로 전시 편성 및 임무 확인, 소집절차 등을 훈련(4시간)

NAME & ADDRESS

[illegible]



비매품